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116
------------	------

2019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16일, 이영실 의원 외 11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9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위한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보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등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원안가결
-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행빈도가 높은 통학로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에 반영코자 일부개정 발의내용으로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 강화함이 타당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행빈도가 높은 통학로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우선설치,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 정비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 실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¹⁾에서는 “시장은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제10조제1항²⁾에서는 시장이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된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안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이하 생략-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전을 위협하는 적치물 정비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³⁾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지구’⁴⁾를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 확보 방안이 강화되었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및 보행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3)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 행정책과-12526

4) 《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 》

유형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구	교통약자지구	농어촌중심지구	대중교통지구
대상	주택가 등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 지역	문화재 및 관광·휴양지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농어촌소재지 등 보행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u></p>

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하교 시간대 등 어린
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
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
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
을 실시할 수 있다.